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2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2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12. 1~12. 29)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2.4	전기매트	전화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발생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이 안됨
12.5	전기뜸질기	내방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만하고 판매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조립공장에서 PL보상 책임을 지는것인지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조립공장에서 책임지고 후에 해외 exporter에게 구상권을 가짐
12.7	배선기구	전화	부품 납품업체와의 책임(보상문제) 한계는?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12.14	전기매트	내방	결함의 입증여부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판정은 후에 공식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데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12.18	배선기구	내방	출고(외상판매) 후 중간 유통상을 통해 판매되었고, 그 후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음. 사고 발생 시 중간 유통상이 보상책임이 있는가?	보상을 하여야 함(연대책임)
12.20	전기스토브	내방	지시 / 경고 문구 작성의 애로사항	부분적으로 품목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표시사항 검토중
12.22	전열보오드	내방	주의 및 경고 label부착시 공간부족으로 붙이기가 힘들 때의 방법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 놓는 것도 바람직함
12.27	전기스토브	내방	스토브를 켜 놓고 소비자가 방을 비운 사이 옷가지에 불이 붙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 적용